

용역 입찰유의서(긴급)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용역명 : 서울신학대학교 청소용역 입찰
- 나. 장소 :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(대지면적 : 약 72,749㎡)
- 다. 용역기간 : 2014년 3월 1일~12월 31일까지(10개월)
- 라. 용역인원 : 23명(여자)
- 마. 사업예산 : 비공개**※우리 대학의 사업예산 이상으로 가격을 제안할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됨**

2. 입찰 및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(실적 및 지역제한), 총액 입찰, 적격입찰

3. 낙찰방법

- 가. 본고 예정가격(단일예정가격) 이하의 최저가격(부가가치세 포함)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
- 나.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,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음

4. 입찰 일시 및 장소

| 구분 | 일시 | 장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입찰등록 | 2014. 2. 17(월) 11:00까지 |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처 |
| 가격입찰 | 2014. 2. 17(월) 11:30 |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 |

※모든 일정은 본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입찰참가자격

- 가. 입찰공고일 현재 (법인)등기부 등본상 본 사업장이 서울, 경기, 인천에 소재한 업체
- 나. 공중위생법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
- 다.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(1년기준) 유사기관(대학) 및 공공기관에 우리 대학 규모 이상으로 청소용역 계약 실적이 4억이상인 있는 업체
- 라. 본고 및 정부유관기관에서 부당업자 제재정보 사실(지체상금 부과대상업체 등)이 없는 업체
- 마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제76조(부가자격제한)에 의한 당해 요건에 적합한 업체
- 바.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, 합병,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회외 또는 법정관리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

6. 현장설명 :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

- 가. 필요시 본고 입찰담당자 및 시설관리담당자(☎032-3409-228)에게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가능
- 나. 방문하지 않아 내역 등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

7. 입찰제출서류

- 가. 참가자격
 - 1) 입찰참가 회사에 6개월이상 재직함 자(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)
 - 2) 회사 대표자
- 나. 입찰참가 신청서류(순서에 따라 편철)※서류접수시 반드시 인감도장(사용인감) 지함
 - 1) 입찰참가신청서(소정양식) 1부
 - 2)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(입찰금액의 10/100이상) 1부
 - 3) 입찰서(소정양식) 1부(별도로 밀봉하여 가격입찰시 제출)
 - 4) 세부산출내역서 1부(별도로 밀봉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제출, 직접노무비, 복리후생비, 경비, 재료비, 관리비 등 일체 포함)
 - 5) 실적증명원 1부(발행기관 원본)
 - 6) 위생관리용역업 면허사본 1부
 - 7)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(소정양식) 1부
 - 8)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- 9) 국세 및 지방세 연납증명서 각 1부
 - 10)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(필요시 제출) 각 1부

※입찰등록시 반드시 법인인감(또는 사용인감)을 지참하여야 하며,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
8. 입찰보증금

- 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

보증서(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)로 본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기한 : 2014. 2. 17(월) 11:00까지

※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생긴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

다.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(입찰금액의 100/100 이상)을 본고에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.

- 가.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한다.
- 나. 낙찰자가 낙찰통보(계약 체결통보)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고에 귀속한다.
- 바. 재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 시에 제출한 현금 또는 보증서(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)로 같음하며, 의무사항은 동일하다.
- 사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건은 우리 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.

9. 공동도급 및 계약 : 허용하지 않음

10. 입찰참가

- 가.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.
- 나.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.
- 다.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, 입찰참가(입찰대리인 포함)는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서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라. 우리 대학교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납품완료까지 기간중 지체상금등 부과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우리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.
- 마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"나"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.

11.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

- 가. 낙찰자는 "17"번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- 나.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.
- 다. 추첨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실시한다.
- 라. "가"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(낙찰통보)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지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- 마. "라"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.
- 바. 낙찰자 선언에는 낙찰금액과 낙찰예비금제 및 차상위임을 발표할 수 있다.

12. 예정가격 : 단일예정가격으로 공개하지 않음

13. 입찰서 작성

- 가.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)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.
- 나.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.
- 다.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,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.
- 라.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,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.

14. 입찰서 제출

- 가. 입찰서는 봉장하여 1인 1봉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·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다.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5. 경쟁 입찰의 성립

- 가.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.

나. 입찰자는 사전에 특경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금번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다.

16. 입찰금액 : 입찰시에는 총 납품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(***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투찰시에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제출**)

17. 입찰무효사항 : 다음의 각 항의 "1"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

- 가.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
- 나.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
- 다.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
- 라.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
- 로.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경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
- 바.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,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
- 사.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
- 아. 입찰자의 기밀날인이 없는 입찰(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강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)
- 자. 입찰서의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사유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
- 차.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
- 카. 낙찰자가 **낙찰행보 후 7일**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
- 타. 입찰서에 우리 대학 사업예산(예정가격) 이상의 금액으로 제출한 입찰
- 파. 상기 각 항의 "1"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음

18. 입찰연기

- 가. 대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.
 - 1)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총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)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
- 나. "가"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
19.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

- 가. 대학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입찰자(*입찰에 참가한 업체 전체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대학이 허락할 경우 재입찰에 참가를 희망한 업체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.)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**단, 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.**
- 나.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.
- 다. "가"항 및 "나"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

20. 계약의 체결

- 가. 낙찰자는 **낙찰통보일**로부터 **7일**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나. "가"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**관계서류를 방문하여 제출**하여야 한다.
- 다.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"가"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.

21. 물기변동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.

라. **계약의 성립** :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밀·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.

22. 계약의 이행보증

- 가.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.
- 나. 대학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대학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) 특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
 - 2) 대학 규정에 의한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- 다. 대학은 "나"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라. 계약보증금 납부는 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(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)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.

마. "라"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야 한다.

바. 대학 규정에 의한 계약 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 등에 대하여는 재 규정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.

23.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

- 가. 구매 및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한다.
- 나.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여야 하며, 보증회사, 금융기관,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.
- 다.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구매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2회 하자검사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.

24. 비밀유지의 의무

입찰자는 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된다.

25. 기타사항

- 가. 본 입찰은 세부산출내역서(***직접노무비, 복리후생비, 경비, 재료비, 관리비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**)를 첨부하는 총액입찰(부가가치세 포함)임
- 나.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임.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, 사후정산하여야 함
- 다. 입찰금액은 청소용역 및 환경미화외 관련된 모든 관리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, 계약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
- 라. 참가자격 및 용역 실적에 대한 판정은 우리 대학에서 결정하며,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
- 마.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- 바. **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사실, 부당행위(담합, 담당직원의 불공정한 행위 등) 또는 중대한 오류(제출한 규격서 등)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,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**
- 사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,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
- 아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자. 입찰공고문, 입찰유 의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함
- 차.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(**낙찰예비업체 선정 및 계약후에도**)될 수 있음
- 카. 문의
 - 1) 청소용역에 사항에 관한 사항 : 시설관리담당(☎032-340-9228)
 - 2)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: 입찰담당(☎032-340-9222)